

의안번호	2211336
의 퇴 인	김기표 의원
회 답 일	2025. 8. 28.
추계번호	25E36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양도·운영(BTO) 방식으로 건설된 사립대학 기숙사 운영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건설·양도·운영(BTO) 방식으로 건설된 사립대학 기숙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30년말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재정수입은 2026년 9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93억원(연평균 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5년간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총 69억원(연평균 14억원) 감소하며 지방소비세는 총 24억원(연평균 5억원) 감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부가가치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사립대기숙사 운영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안 제106조제1항)	-9	-14	-19	-23	-28	-93	-19
- 국세(74.7%)	-7	-10	-14	-17	-21	-69	-14
- 지방세(25.3%)	-2	-4	-5	-6	-7	-24	-5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건설·양도·운영(BTO) 방식으로 건설된 사립대학 기숙사 운영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 (개정안) 2030년 12월 31일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건설·양도·운영(BTO) 방식으로 건설된 기숙사 시설의 시설 관리 운영권 및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중 제8호¹⁾ 및 제8호의2²⁾는 2014년말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기숙사에 대해 적용하고 동법 동조항 제8호의3³⁾은 2015년초부터 2025년말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기숙사에 대해 적용

1)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 (실적) 동 조세지출액은 2020년 44억원, 2024년 59억원 등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연평균 7.6% ↑)

[표 2] 사립대기숙사 운영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조세지출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조세지출액	44	49	52	57	59	7.6%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 가운데 2015년부터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립·연합 기숙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8호의3)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2년 13.8억원, 2023년 19.9억원, 2024년 23.1억원 등 수준⁴⁾

2) 추계 방법

-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초부터 2030년말까지 실시협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기숙사에 대한 조세지출이므로, 향후 동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실적 추세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15년부터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립·연합 기숙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8호의3)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조세지출 증가분을 동 기간 관련 실시협약의 신규 체결 실적으로 보고, 최근 실적(2023년 6.2억원, 2024년 3.2억원)의 평균 4.7억원이 2025년부터 향후 추계기간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23년 실적 6.2억원(= 19.9억원 - 13.8억원)
 - 2024년 실적 3.2억원(= 23.1억원 - 19.9억원)
- 개정안 통과 이후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추계기간 동안 매년 실시협약이 신규로 체결되고 이후 추계기간 동안 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2025년 세수효과 : 4.7억원 (= 4.7억원 × 1)
 - 2026년 세수효과 : 9.3억원 (= 4.7억원 × 2)

4)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건설·양도·운영(BTO) 방식으로 건설된 사립대학 기숙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30년말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재정수입은 2026년 9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93억원(연평균 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5년간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총 69억원(연평균 14억원) 감소하며 지방소비세는 총 24억원(연평균 5억원) 감소

[표 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부가가치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사립대기숙사 운영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안 제106조제1항)	-9	-14	-19	-23	-28	-93	-19
－ 국세(74.7%)	-7	-10	-14	-17	-21	-69	-14
－ 지방세(25.3%)	-2	-4	-5	-6	-7	-24	-5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성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성은	02-6788-4668	ixsepark@assembly.go.kr